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25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5. 31.
- 라. 회부일자 : 2023. 5. 31.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금천구의회 의 승인을 받고자 함.

III.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관련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서(안)

IV. 2022회계연도 결산

1. 금천구 결산 총괄

1) 2022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839,987,276,701	903,992,899,416	676,766,981,182	227,225,918,234
일반회계	821,824,651,001	887,199,647,186	667,761,923,172	219,437,724,014
특별회계	18,162,625,700	16,793,252,230	9,005,058,010	7,788,194,220

회 계 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52,968,679,616	21,535,322,570	-	21,284,764,096	△550,768,166		131,987,920,118
일반회계	50,768,679,616	20,349,055,030	-	21,251,764,906	△550,768,166		127,618,992,628
특별회계	2,200,000,000	1,186,267,540	-	32,999,190	-		4,368,927,490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03,992,899,416원으로 예산현액 839,987,276,701원보다 64,005,622,715원이 더 수납됨.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의 75%인 676,766,981,182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7,225,918,234원임. 이 중 명시이월비 52,986,679,616원, 사고이월비 21,535,322,57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0,733,995,930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31,987,920,118원 임.

2)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계	기편성예산	추경재원조정액	비 고
합 계	131,987,920,118	74,652,631,000	57,335,289,118	
일 반 회 계	127,618,992,628	68,215,001,000	59,403,991,628	
특 별 회 계	4,368,927,490	6,437,630,000	△2,068,702,510	

○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131,987,920,118원으로서 2023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68,215,001,000원과 특별회계 6,437,630,000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59,403,991,628원과 특별회계 △2,068,702,510원을 합한 57,335,289,118원이 2023년도 추경재원으로 편성 가능한 금액임.

3)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32,473,993,000	7,256,904,000	4,416,247,850	-	2,840,656,150
일 반 회 계	32,333,993,000	7,256,904,000	4,416,247,850	-	2,840,656,150
특 별 회 계	140,000,000	-	-	-	-

○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2,473,993,000원으로서 전년도 15,715,733,000원보다 16,758,260,000원 증가하였으며, 『화물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외 28건으로 7,256,90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416,247,85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840,656,1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4) 기금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38,957	1,003	10,938	9,934	39,960
남북교류협력기금	101	52	52	-	153
재난관리기금	7,662	△849	3,978	4,827	6,8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303	497	497		17,800
중소기업육성기금	5,170	742	3,839	3,097	5,912
청년미래기금	1,532	528	528	-	2,060
자활기금	1,049	△133	26	159	916
노인복지기금	353	△1	6	7	352
양성평등기금	456	5	55	50	461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90	△13	25	38	477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290	19	26	7	309
옥외광고발전기금	1,138	△4	160	164	1,134
도로굴착복구기금	2,484	207	1,682	1,475	2,691
식품진흥기금	929	△46	64	110	883

- 본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말 38,957,445,185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0,937,544,445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934,459,692원이고
차인잔액은 39,960,529,938원임

2. 복지가족국 결산 총괄

가. 복지가족국 세입 총괄

(일반회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272,122,554,000	273,032,416,624	272,925,208,964	99.9%
복지정책과	21,051,397,000	21,068,834,390	21,068,252,120	99.9%
복지지원과	67,100,515,000	66,847,159,820	66,813,105,220	99.9%
어르신 장애인과	115,839,669,000	116,182,227,340	116,110,850,840	99.9%
가족정책과	56,054,449,000	56,832,656,814	56,831,656,814	99.9%
아동청소년과	12,076,524,000	12,101,538,260	12,101,343,970	99.9%

나. 복지가족국 세출 총괄

(일반회계)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B/A)
계	366,466,564,000	339,341,060,611	6,421,521,600	10,224,888,380	92.6%
복지정책과	40,941,820,000	33,779,118,216		1,741,621,684	82.5%
복지지원과	77,099,148,000	75,123,228,620		339,612,020	97.4%
어르신 장애인과	145,313,791,000	142,947,855,980	459,520,000	1,070,141,206	98.3%
가족정책과	80,497,811,000	70,785,116,990	5,942,001,600	1,547,180,525	87.9%
아동청소년과	22,613,994,000	16,705,740,805	20,000,000	5,526,332,945	73.8%

다. 집행잔액
(일반회계)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사 유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계	366,466,564,000	10,224,888,380	3,287,578,682	0	5,376,144,000
			0	1,561,165,698	0
복지정책과	40,941,820,000	1,741,621,684	1,196,722,841		
				544,898,843	
복지지원과	77,099,148,000	339,612,020	248,209,270		
				91,402,750	
어르신 장애인과	145,313,791,000	1,070,141,206	406,119,096		
				664,022,110	
가족정책과	80,497,811,000	1,547,180,525	1,377,454,175		1,000,000
				168,726,350	
아동청소년과	22,613,994,000	5,526,332,945	59,073,300		5,375,144,000
				92,115,645	

라. 집행률 저조사업

(단위: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가)	지출액(나)	이월액(다)	집행잔액 (가-나,다)	집행률 (나/가)
	계	18,873,201,000	12,545,630,760		6,327,570,240	66.47%
복지정책과	재해구호 관리	3,000,000			3,000,000	0%
	찾동 방문인력 예 방 접 종	11,700,000	6,695,000		5,005,000	57.22%
	고 독 사	5,000,000	1,000,000		4,000,000	20.00%

	유품정리 사업					
	생활지원비 지원	18,740,848,000	12,466,837,140		6,274,010,860	66.52%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위문	4,500,000	2,424,000		2,076,000	53.87%
	기본경비	108,153,000	68,674,620		39,478,380	63.50%
복지지원과	계	2,263,227,000	908,457,500	0	1,354,769,500	40.1%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1,590,320,000	807,339,880	0	782,980,120	50.7%
	의료급여기금출 특별회계 전출	30,515,000	17,749,620	0	12,765,380	58.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642,392,000	83,368,000	0	559,024,000	12.9%
어르신 장애인과	계	36,675,525,600	2,735,308,110	12,265,003,200	21,675,214,290	1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구비추가	34,020,000	15,849,000	0	18,171,000	47%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141,182,000	63,861,170	0	77,320,830	45%
	스마트경로당 조성	457,000,000	0	457,000,000	0	0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7,000,000	4,500,000	0	2,500,000	64%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10,034,000	0	0	10,034,000	0
	계	18,013,144,800	1,325,548,970	5,904,001,600	10,783,594,230	18.11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1,552,656,000	49,694,100	1,502,961,900	0	3.20
	구립 별하 어린이집 신축	3,870,117,000	722,760,230	3,145,678,000	1,678,770	18.68
	보수교육비	14,056,000	9,490,000	0	4,566,000	67.52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5,000,000	2,500,000	0	2,500,000	50.00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1,200,000,000	338,426,500	861,573,500	0	28.20
	생활문화센터 성조	476,000,000	111,730,000	364,270,000	0	23.47
	1인가구 안전도어 지킴이 설치지원	6,727,800	4,164,600	0	2,563,200	61.90
	계					

	다 문화 쉽 터 은	6,000,000	1,058,780	0	4,941,220	17.65
	외국인·다문화 정 책 개발 연구용역	100,000,000	69,575,800	29,518,200	906,000	69.58
아동청소년과	계	5,391,294,000	8,074,480	0	5,383,219,520	
	청소년 문화의 집 립	5,376,494,000	1,224,480	0	5,375,269,520	0.02%
	입양 가정 및 가정 위탁 아동 지원	14,800,000	6,850,000	0	7,950,000	46.28%

※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집행률 70% 미만 사업)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1,298,368,000	2,407,792,376	1,448,143,896	60.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5,976,000	1,259,250,460	793,888,980	6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장기금 특별회계	642,392,000	1,148,541,916	654,254,916	56.9%

나. 세출결산

(단위: 원)

부서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B/A)
계	1,462,427,000	881,537,570		571,789,580	60.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20,035,000	798,169,570		12,765,580	97.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장기금 특별회계	642,392,000	83,368,000		559,024,000	12.9%

4. 예산의 전용 : 해당사항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21	6,421,522	14	5,606,046	7	815,476
어르신장애인과	5	459,520	4	457,000	1	2,520
가족정책과	15	5,942,002	9	5,129,046	6	812,956
아동청소년과	1	20,000	1	20,000		

가. 명시이월 사업 현황 : 14건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 산 현 액	원 인 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어르신 장애인과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무관리비	25,500		25,500	[집행시기 미도래] '22. 12. 16. 서울시 특별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함
		행사운영비	76,000		76,000	[집행시기 미도래] '22. 12. 16. 서울시 특별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		500	[집행시기 미도래] '22. 12. 16. 서울시 특별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함
		자산및물품 취득비	355,000		355,000	[집행시기 미도래] '22. 12. 16. 서울시 특별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함
가족 정책과	어린이집 그린리모 텔링 사업	시 설 비	1,533,001	839,448	914,170	국토부 승인절차 지연, 공사계약 지연. 겨울철 공사에 대한 보호자 임시 보육 부담으로 착공일자 '23.2월 이후로 연기

		감 리 비	19,655	10,274	19,655	[연도 내 지출 불가] 실시 설계 및 국토부 승인절차 지연으로 '22.12월 2개소 공사 계약 및 착공하였고, '23.상반기 공사 추진 예정으로 연도 내 지출 불가
--	--	-------	--------	--------	--------	---

나. 사고이월 사업 현황 : 7건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원 인 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 월 사유	
어르신 장애인과	금천50플러스센터 운영	시 설 비	3,609	3,607	2,520	공사 자재 주문 후 조달까지 최소 3주 소요 (12.23.업체 준공계 제출)	
가 족 정책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시 설 비	460,187	415,394	38,000	화물연대 파업 및 자체 조달 어려움으로 공사기간 연기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 설 비	1,533,001	839,448	569,136	국토부 승인절차 지연, 공사계약 지연. 겨울철 공사에 대한 보호자 임시 보육 부담으로 착공일자 '23.2월 이후로 연기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감 리 비	24,930			24,930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부지 기존건물 철거공사 감리 용역이 '23.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시설부대비	17,393	750,000		16,643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공사 '23.상반기 발주 예정으로 시설부대비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 설 비	476,000	246,458		134,728	[연도 내 지출불가] 사전행정절차, 설계 용역 등으로 '23.상반기발주 예정으로 연도 내 지출 불가
외국인·다문화 정책 개발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99,000	98,394		29,518	외국인 주민과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용역이 '23.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회계연도 내 지출 불가	
아 동 청소년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29,800	9,800	20,000	[연도 내 지출 불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함	

6.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

○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계	326,297,149	326,082,591	310,547,255	2,032,345	13,502,988	95.2%
복지정책과	26,124,074	26,289,668	19,605,107		6,684,561	74.5
복지지원과	75,369,846	75,259,388	73,450,315		1,809,072	97.5
어르신장애과	140,638,340	140,635,951	139,423,927	2,520	1,209,504	99.1
가족정책과	68,804,419	68,537,113	63,183,754	2,029,825	3,323,533	92.1
아동청소년과	15,360,470	15,360,471	14,884,152		476,318	96.8

7.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1,858,175	139,682	86,550	215,963	1,728,762
자활기금	1,049,099	△132,848	26,151	159,000	916,250
노인복지기금	353,134	△1,699	5,530	7,230	351,435
양성평등기금	455,942	5,135	54,869	49,733	461,077

V.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 세출예산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2.6%로 2021년도 92.2%보다 0.4%p 증액
-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2,152만원으로 2021년도 이월액 99억 2,430만원보다 35억 278만원 감소
- 집행잔액은 총 102억 2,48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2.6%임.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정산잔액 32억 8,57만원, 지출잔액 15억 6,116만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53억 7,614만원임.

2.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의료급여기금은 예산현액대비 세입결산액 7억 9,38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징수결정액 11억 4,850만원 대비 56.9%인 6억 5,425만원을 징수함.
- 의료급여기금은 지출액 7억 9,81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7.4%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은 집행율은 12.9%임.

3. 예산의 전용 : 해당사항 없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22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14건 56억 604만 6천원**이며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7건 8억 1,547만원**이 이월되었음.

5.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

-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2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 총사업비 3,262억 9,714만원이 계획되었으며
 - 실제 수령액은 3,260억 8,259만원이며
 - 집행액은 3,105억 4,725만원이며
 - 이월액 20억 3,234만원, 집행 잔액은 135억 2,988만원임

6. 기금 결산

- 복지가족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18억 5,817만원이며
 - 당해연도 증감액은 1억 3,968만원이며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7억 2,876만원임.

7. 검토 의견

- 복지가족국 일반회계의 집행률이 구 전체 집행률(81%) 보다 높게 나타나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 예측에 적정성이 있다고 보여짐. 또한, 금천형 복지를 위한 성과는 63.88%로 나타났으며 주민의 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봄
- 보조금의 경우 연도 말에 교부되어 사업진행이 어려워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상급기관에 교부시점을 건의하는 등 연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또한 보조금의 반납 및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은 사전 세밀한 예산 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매년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에서는 집행실적과 성과에 따른 건전한 재정의 분배와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면밀한 노력이 요구됨

관계법령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8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사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8.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